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156-8 / 전송 731-6562

분서번호 법무 11150-113

시행일자 1993. 4. 2

경유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취급		시 장
보존		
부 시 장	김영호	
기획관리실장	김영호	
법무 담당관	홍	
기안	법제국장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공포

1.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부장관에게 사전보고(93.3.24)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자 합니다.

첨부 1. 규칙 공포안 1부, 끝.

(제 2 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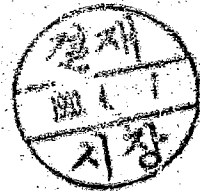
수신 공보관

첨부 공보1담당관

제목 시보게재

규칙 12543 호

0397



1. 별첨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기 바랍.

첨부 : 서울특별시규칙 제113호 2부, 끝.

## 서울특별시장

(제 3 안)

수신 교통기획과장

제목 규칙공포 통보

1. 교기 91144-350(93.3.16)호와 관련임.

2.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.

첨부 : 서울특별시규칙 제113호 1부, 끝.

## 서울특별시장

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달사업규칙중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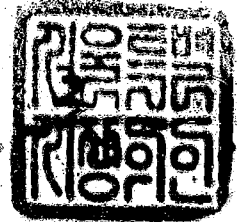
규칙

을 이에 공포 한다

시장

서울특별시장

이권



1993년 4월 일

서울특별시 규칙제 144호

##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중 "(시금고과)"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시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공채증권을 한국상업은행 태평로지점으로 부터 인수하여 처분한다. 다만, 상환공채와 서손공채의 처분은 한국상업은행에 위탁한다.

제22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시금고인 한국상업은행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상환공채와 서손공채를 처분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